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827
----------	-----

1999년 9월 7일

1. 제안이유

- ◎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조직이 전면 재조정됨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을 재조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철저히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◎ 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제1항제2호

나. 사업소

- 현행 : 성남시수도사업소, 성남시환경사업소, 성남시청소사업소
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,
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, 성남시
농수산물유통사업소, 성남시도서관지원사업소, 성남시공
원관리사업소를,
- 개정 :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 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, 성남시
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, 성남시
근로자종합복지관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, 성남시농수산물
유통사업소, 성남시문화정보센터로 순서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

3. 검토의견

- ◎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기관의 조직이 재조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
- ◎ 집행부의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고,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